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0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12일 최호정 의원의 14명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3일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최호정 의원)

1. 제안이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위해 재난 시 대피요령, 문화적 다양성 인정 등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에게도 외국인주민과 같이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생활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아울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가

족 자녀에 대한 보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1항제9호, 제7조제2항제9호)
-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2항제1호)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을 규정함. (안 제7조제2항제2호)
-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등과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제2항제10호 및 제12호)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444,443명으로 전체 서울 시민 9,586,195명 중 4.6%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¹⁾ 및 다문화가족²⁾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원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임.

<2020년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³⁾>

(단위 : 명)

총 인구수 (A)	비율 (B/A)	외국인 주민수 (B)=(C)+(D)+(E)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C)						한국 국적 취득자 (D)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E)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 타 외국인		
9,586,195	4.6%	444,443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4,220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바,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가족구성원의 국적 관련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 일부는 대부분 외국인주민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음.

3) (2021.11.17.)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주요내용 검토

- 동 개정안은 현행 제7조(지원의 범위)를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로 수정하고, 제7조 해당 각호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재난시 대피요령(안제7조제1항제9호, 안제7조제1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문화적 다양성 인정 등을 위한 교육·홍보(안제7조제3항) ▲다문화가족 인권옹호 등을 위한 교육·홍보(안제7조제2항제1호) ▲다문화가족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안제7조제2항제10호) ▲가정폭력 피해 입은 결혼이민자 등 보호·지원(안제7조제2항제11호) ▲신체적·정신적 등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안제7조제2항제12호) 내용을 추가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과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임.
- 본 개정안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각각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도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보편적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집행부도 동 개정안 발의 관련하여 서남권글로벌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시설 등(붙임)을 운영하며 관련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제7조제2항제5호와 개정안 제7조제2항제11호가 중복되어 수정이 필요함.**

현행		개정안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7조 제2항 제5호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u>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u>	제7조 제2항 제11호	<u>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지원</u>

- 또한 동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의 내용에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 조문의 간결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로 수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전체 서울시민의 4.6%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범위와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현행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고 내용상 중복되는 표현을 생략하여 조문의 이해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 보육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본 개정안의 정책적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와 차별화를 통해 돌봄공백 없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붙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사업개요

○ 외국인지원시설 15개소

센터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센터 이용인원 (연인원 22.8월 기준)	
합 계 (15개 시설)			170,218명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지원 : 외국인주민 포털 운영 및 외국인주민 정보 다국어 번역·제공(13개 언어) ▶상담지원 : 외국인주민 생활상담(10개 언어*) 및 전문상담(법률, 노무 등) 서비스 ▶교육지원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정착지원 사업 수행(한국어교실, 미디어교육 등) <p>*10개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필리핀어</p>	52,691명	
외국인 노동자 센터 (6개소)	소 계		36,031명	
	강 동	외국인 노동자	▶상담지원 : 생활 및 노무·법률 분야 상담 등	3,636명
	금 천		▶교육지원 : 한국어, 컴퓨터 교육 등	6,138명
	성 동		▶의료지원 : 상시진료(월 1~2회), 건강검진(연 1~2회), 긴급의료 지원	6,532명
	성 북		▶특화사업 : 직업능력(소잉, 바리스타 등), 커뮤니티, 문화행사(체육대회, 캠프 등), 인권교육(소양교육, 인권영화제 등), 찾아가는 상담 등	6,668명
	양 천			8,068명
	은 평			4,989명
빌리지 센터 (7개소)	소 계		66,609명	
	연 남	외국인 주민	▶생활상담 : 생활정보 제공,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7,657명
	역 삼		▶교육지원 : 한국어강좌, 한국어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5,021명
	서 래		▶문화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 역사 및 문학 프로그램 운영	10,022명
	이태원		▶특화프로그램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건강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운영, 축제 개최, 자원봉사활동 등	17,940명
	이 촌			10,425명
	성 북			4,128명
금 천			11,416명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	중도입국 청소년 및 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지원 : 한국어 기본교육(초·중·고급), TOPIK 과정 등 운영 ▶교육 지원 : 방과후 멘토링, 학교수업 보조 지원,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특화교육 ▶맞춤 지원 : 상담(심리, 진학),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진로체험, 문화예술 동아리 등) ▶적응 지원 : 한국사회 이해교육, 또래문화 이해, 언어별 커뮤니티 지원 등 	14,887명	

센터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센터 이용인원(연인원)※ 22.8월 기준
송파 강동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 장소 제공	9개소 (중구, 성동, 동대문, 서대문, 구로, 관악)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얼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하여 유망분야를 찾아가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다문화 친화 활동 추진	25개소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대상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6개소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구로, 영등포)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중인 아동 대상 취학준비 학습지원	10개소 (종로, 중구,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강서, 영등포, 송파, 강동)

○ 이주여성 지원시설 : 상담소 2개소, 보호시설 7개소 (쉼터 4, 그룹홈 2, 자활 지원센터 1)

(단위 : 명)

구분	시설명	비고
합계	9개소	
위기이주여성	상담센터 (1)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대상) 다양한 사유(폭력 등)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등 (기능) 전문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및 긴급보호시설 운영 - 전문상담(심리치료, 집단상담 등) - 통번역서비스 제공(동행서비스 제공) - 긴급보호시설(쉼터) 운영 ※ 산하 긴급보호시설 '한○○○쉼터' 운영 (3개월 보호, 1회 연장가능, 비공개시설)
	상담소 (1)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기능) 폭력피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모국어상담, 의료·법률 지원 - 긴급피난처 연계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4) *비공개시설	(대상) 긴급한 일시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기능) 단기보호 및 숙식제공 -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 자립·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보호기간) 2년 이내
	보호시설 (7)	그룹홈(2) *비공개시설
		(대상)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기능)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및 기초 생활 지원, 심리상담, 의료·법률지원 등 (보호기간) 2년 이내
		자활지원센터(1) *비공개시설
		(대상) 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경유자로서 자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기능) 자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지원 등 (보호기간) 2년 이내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현행과 개정안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를 ‘높이고’로 수정함. (안 제7조제2항제1호)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삭제함. (안 제7조제2항제11호)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0
----------	----------

제안년월일 : 2022년 9월 23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과 개정안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를 '높이고'로 수정함. (안 제7조제2항제1호)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삭제함. (안 제7조제2항제11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
한”을 “높이고”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비요령”을 “대피요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와”를 “각
호와 제3항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u>구호</u></p> <p>10.·11. (생략)</p> <p>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u>홍보</u></p> <p>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u>적응교육</u></p> <p>3. ~ 8. (생략)</p> <p><u><신설></u></p>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u>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u></p> <p>10.·11.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u></p> <p>2. ----- ----- -- <u>적응교육과 상담</u></p> <p>3. ~ 8. (현행과 같음)</p> <p>9. <u>재난상황 시 대피요령</u></p>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u>대피요령 -----</u> -----</p> <p>10.·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 <u>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u></p> <p>2. (개정안과 같음)</p> <p>3. ~ 8. (현행과 같음)</p> <p>9.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설></p>	<p>등에 관한 정보제공</p> <p>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p>	<p>10.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11.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지원</p>	<p><삭제></p>
<p><신설></p>	<p>12.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p>	<p>11. (개정안 제12호와 같음)</p>
<p>9. (생략)</p>	<p>13. (현행 제9호와 같음)</p>	<p>12. (현행 제9호와 같음)</p>
<p><신설></p>	<p>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④ ----- ----- 각 호와 ----- ----- ----- -----.</p>	<p>④ ----- ----- 각 호와 제3항과 ----- ----- ----- -----.</p>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지원의 범위)”를“(지원의 내용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구호”를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응교육”을 “적응교육과 상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11.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각 호와”를 “각 호와 제3항과”로 한다.

-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u>구호</u></p> <p>10.· 11. (생략)</p> <p>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u>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u></p> <p>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u>적응교육</u></p> <p>3. ~ 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9. (생략)</p>	<p>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u></p> <p>10.· 11.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u></p> <p>2. ----- ----- <u>적응교육과 상담</u></p> <p>3. ~ 8. (현행과 같음)</p> <p>9. <u>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u></p> <p>10. <u>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u></p> <p>11. <u>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u></p> <p>12. (현행 제9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56 349 405 387"><신설></p> <p data-bbox="256 584 799 734">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8 349 1401 562">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p> <p data-bbox="858 584 1401 734">④ ----- 각 호와 제3항과 ----- -----.</p>